

자료 09-05

관세율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연구

2009. 7

정재호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연구

2009. 7

정 재 호

개 요

- 주제 :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 일시 : 2009년 7월 9일(목) 15:00~17:00
- 장소 :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15:00~15:10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5:10~16:30 주제발표 및 토론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 ▶ 사회자 :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 발표자 :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토론자 :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선임연구위원
이원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장근호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가나다 순)

16:3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목 차

I. 서 론	1
II. 기본관세율 구조와 FTA 협정세율과의 관계	3
1. FTA와 기존 관세율 구조와의 이론적 관계	3
가. Richardson의 이론적 분석	4
나. 정재호(2000, 2001) 이론 분석	6
III.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14
1. 현행 관세율 구조	14
가. 기본관세율 구조	14
나. 기본관세율 구성	17
2.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	19
가. 제약조건과 분석시나리오 설정	20
나. 분석 결과	23
3. 균등과 중심관세율 구조 비교	30
가. 분석 시나리오 설정	30
나. 분석 결과	33
IV. FTA 협정세율과 기본관세율 관계	37
1. 주요국의 FTA 체결 이후의 관세율 변화	37
2. FTA 발효와 연계된 중심관세율 인하	39
3.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정책	44
가. 가공단계별 경사관세구조	44
나. 중간재 수입비중의 특징	46
다. 정책방향	49
4. 동일 물품의 상이한 관세율로 인한 문제	53
가. 금지금	54

나. 다이아몬드	56
V. 결론	58
참고문헌	63

표 차 례

<표 1> 우리나라 6대 교역지역	1
<표 2>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국내시장가격 변화	9
<표 3> 제2차 관세율 구조 개편원칙	15
<표 4>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17
<표 5>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4년 이전)	18
<표 6> 기존 관세율 수준 및 양허세율 제약(2003년)	23
<표 7>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	26
<표 8>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섬유, 전자 관세율에 제약 가정)	28
<표 9> 중심관세율 인하 효과 분석 시나리오	32
<표 10> 시나리오별 관세율 수준	35
<표 11> 시나리오별 관세 변화율	35
<표 1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9
<표 13> 우리나라 6대 교역지역	40
<표 14> FTA 특혜세율 적용	42
<표 15>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45
<표 16> 주요국의 공산품 중간재 수입비중	47
<표 17> 주요국의 공산품 최종재 수입비중	48
<표 18> 주요국의 공산품 중간재 관세징수액 비중	48
<표 19> 주요국의 공산품 중간재와 최종재 관세율 비교(2006년)	51
<표 20> 귀금속·보석의 관세율	54
<표 21> 금지금의 국가별 수입 비중	55
<표 22> 금지금의 국가별 수입액	55
<표 23> 7105.10.2000 더스트와 분(다이아몬드 합성의 것)	56
<표 24> 7102.39.0000 원석(공업용이 아닌 것)	57

그림 차례

[그림 1] 소국의 수입수요곡선	5
[그림 2] 자유무역협정내 수요 및 총공급곡선	7
[그림 3]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8년 이후)	19
[그림 4]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	37
[그림 5]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국에 대한 교역 비중	39

I. 서론

- 아세안, 미국, EU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
 - 2007년 아세안과의 상품분야 FTA 체결
 - 미국과의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음
 - EU, 일본, 중국, GCC와의 FTA도 협상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음

- 2008년 기준 아세안, 미국, 그리고 EU와의 교역비중은 우리나라 수출 기준 36.5%, 수입 기준 27.4%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
 - 아세안, 미국, EU는 우리나라 6대 교역국 일원

<표 1> 우리나라 6대 교역지역

(단위: %, 십억달러)

	중국	EU	ASEAN	미국	OPEC	일본
수출비중	21.7 (1)	13.8 (2)	11.7 (3)	11.0 (4)	7.4 (5)	6.7 (6)
수입비중	17.7 (2)	9.2 (5)	9.4 (4)	8.8 (6)	24.0 (1)	14.0 (3)
무역수지	14.5	18.4	8.4	8.0	-73.1	-32.7

주: 2008년 수출입통계 기준이며, ()안은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도 영향을 미침

- 현재 중심세율 체계에서의 FTA 협정세율로 인해 무역전환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율 정책 필요
 - 동일 물품의 상이한 관세율로 인한 문제점
 - 현재 진행 중인 WTO DDA와의 관계
-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협상과 함께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향후 지속될 우리나라의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 기본관세율 구조의 기본적인 방향 정립에 활용
 - 가공단계별 관세율 체계의 방향 모색의 참고자료

Ⅱ. 기본관세율 구조와 FTA 협정세율과의 관계

1. FTA와 기존 관세율 구조와의 이론적 관계

- FTA는 협정 체결국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옴
 -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여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그 만큼의 수입 증가
 -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수출이 그 만큼 증가
 -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다시 말해 수출을 더 하게 되는 생산자에게는 FTA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가격까지 하락하게 될 경우 이러한 분야에 있는 생산자에게는 손실이 돌아가게 됨
 -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득과 손실을 보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 집단 내에 있던 자원들도 다시 재배분되는 현상이 발생

- FTA 체결로 FTA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관세(external tariff)는 이론적으로 FTA 체결 이후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정책
 -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그 만큼 생산자가 이익을 더 얻음
 - 그 동안 생산자를 보호하던 관세를 인하하여도 생산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릴 수 있음
 - 반대로 FTA 체결 이후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도 상대국의 무임승차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등 경제에 왜곡을 불러오므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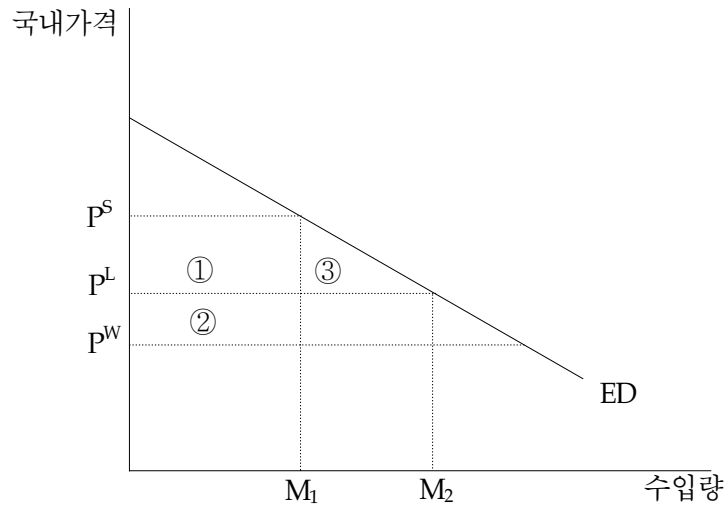
가. Richardson의 이론적 분석

-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회원국의 대외관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Richardson(1993, 1995), 정재호(2000, 2001) 등이 있음

- Richardson(1993)은 소국(small country)과 대국(large country)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였을 때 '대국은 기존의 관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 아래서 소국의 최적관세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그의 결론은 소국이 관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FTA 이후 대외관세를 낮추지만 대외관세를 철폐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 [그림 1]에서 ED는 소국의 수입수요를 나타냄
 - 소국은 FTA 이전에 관세부과로 ①+②만큼의 관세수입을 얻고 있음
 - 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대국의 국내시장가격이 더 낮은 관계로 전량 대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됨
 - 이로써 추가적인 순잉여(net surplus)는 ①+③이나 관세수입은 없음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③-②가 양(+)인 경우 소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지만, 그 크기가 음(-)인 경우 손해를 보게 됨
 - 여기서 만약 소국이 관세를 대국보다 아주 조금 낮게 부과할 경우, 순잉여는 ①+③과 관세수입 감소분 ①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전체적인 이득은 ③이 됨
 - 이와 같은 경우 소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소국은 관세수입을 얻게 됨

[그림 1] 소국의 수입수요곡선



- Richardson(1995)은 두 대국이 FTA 체결한 후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
- 그는 두 대칭적인 대국의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은 두 나라가 영(0)의 대외관세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음
 - 두 대국의 대외관세가 같은 수준일 때 그 중 한 국가가 관세를 상대국보다 아주 조금 낮게 낮출 경우, 자국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상대국에 수출하고 그 수출만큼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수입 증가
 - 반대로 대외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가는 상대 회원국의 수출로 인하여 그 만큼의 관세수입이 감소함
 - 이와 같은 관세수입 차이로 두 나라의 후생함수가 두 나라의 대외관세가 동일한 점에서 비연속적 함수 관계를 나타내므로 두 대칭적인 대국의 유일한 내쉬(Nash)균형은 두 국가가 영(0)의 관세를 채택하는 것임

나. 정재호(2000, 2001) 이론 분석

- 정재호(2000, 2001)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
 - 특히, 정재호(2000)는 소국과 대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할 경우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재호(2001)는 소국과 소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적관세 및 가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양국의 국내시장가격 특히 국내소비자와 국내생산자들의 시장가격에 대해 분석

1)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소비자 및 생산자 가격 변화

- FTA 체결로 인한 가격효과만을 보기 위해 우선 두 국가(A와 B)는 FTA 체결 전 동질적인 상품 X를 다른 나라들(rest of the world)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가정함¹⁾

- 국가 i 는 X 재화에 대해 MFN 관세 t^i 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 i 의 국내시장가격은 $p^i(=p^w+t^i)$, 수요와 공급은 각각 $D^i(p^i)$ 와 $S^i(p^i)$ 로 표시됨
 - 양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t^A > t^B \geq 0$, 즉, $p^A > p^B \geq p^w$)고 가정²⁾. 위의 가정 아래서 B국의 생산자는 X 재화 가격이 자국보다 높은 A국에 X 재화를 판매하고자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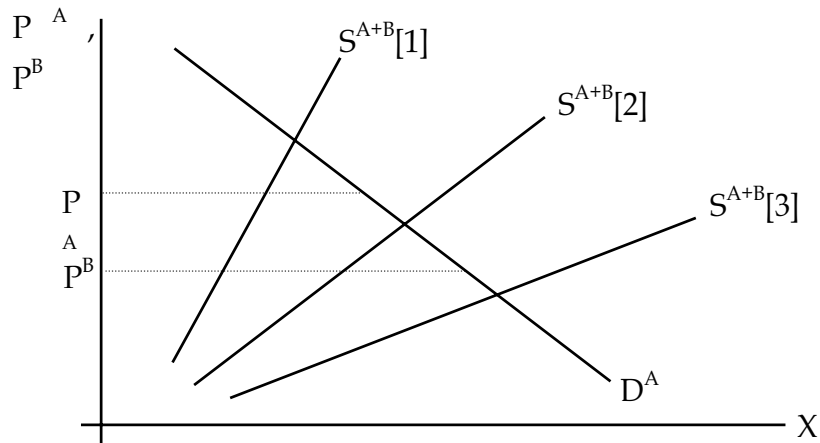
 - 하지만 반대로 A국 생산자는 가격이 낮은 B국에 X 재화를 판매하지 않음

1) 만약 두 나라가 X 재화를 수출하고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이들 국가의 국내시장가격과 생산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국가의 수출재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과 동일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품판매의 재분배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느 한 국가가 X 재화를 수입하고 있을 경우 두 국가의 국내시장가격이 다르기에 자유무역협정은 그 재화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준다.

2) 관세가 0보다 작은 경우는 관세가 아닌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다음 그림은 A국의 수요곡선과 양국(A국과 B국)의 가능한 모든 총공급곡선 S^{A+B} 를 나타냄

[그림 2] 자유무역협정내 수요 및 총공급곡선



- 첫째, A국의 자유무역협정 가입 전 국내시장가격인 p^A 에서 양국의 총생산이 A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가정함

- 이 가정은 그림의 총공급곡선 $S^{A+B}[1]$ 을 의미함³⁾

$$S^A(p^A) + S^B(p^A) < D^A(p^A). \quad \text{가정 [1]}$$

- 이 경우 A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도 기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계속 X 재화를 수입하여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변동이 없음
- B국의 생산자는 전량을 값이 비싼 A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B국의 소비자는 전량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소비를 충족함
-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A국과 B국의 소비자는 자유무역협정 전과

3) Grossman & Helpman(1995)은 이러한 경우를 'enhanced protection' 이라고 불렀다.

같이 서로 다른 국내시장가격을 지불하지만, 양국의 생산자는 동일한 가격 (값비싼 A국의 국내시장가격)을 받게 됨

□ 둘째, 반대로, 양국의 총생산이 A국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가정함

○ 이 가정은 그림의 총공급곡선 S^{A+B} [3]을 의미함⁴⁾.

$$S^A(p^B) + S^B(p^B) > D^A(p^B). \quad \text{가정 [2]}$$

○ B국의 생산자는 우선 값비싼 A국에 수출을 하지만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B국의 국내시장가격과 동일할 때까지 하락함⁵⁾

○ 따라서 B국의 생산자는 양국에 X 재화를 판매함

○ A국은 더 이상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지만, B국은 A국에도 X 재화를 판매하므로 전보다 더 많은 양을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되지만 B국의 국내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B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은 변화가 없으나,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하락하여 B국과 동일하게 되므로 양국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시장가격은 동일하게 됨

□ 마지막으로 중간경우로 그림의 총공급곡선 S^{A+B} [2]를 생각할 수 있음⁶⁾

$$S^A(p^{A'}) + S^B(p^{A'}) = D^A(p^{A'}) \quad \text{where } p^B < p^{A'} < p^A. \quad \text{가정 [3]}$$

○ B국의 생산자는 우선 값비싼 A국에 수출을 할 것이며, A국의 국내시장가

4) Grossman & Helpman(1995)은 이러한 경우를 'reduced protection' 이라고 불렀다.

5) 만약 B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더 하락할 경우 B국의 생산자는 값싼 A국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자국에만 판매하므로, A국의 시장가격은 다시 상승하여 결국 B국의 시장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6) Grossman & Helpman(1995)은 이러한 경우를 'intermediate case' 이라고 불렀다.

격은 하락하여 p^A 와 p^B 사이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됨

- 따라서 A국은 더 이상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B국의 수출로써 자국의 수입수요를 충족시킴
- B국의 생산자는 A국에만 X 재화를 판매하므로 B국의 소비자는 전량 비회원국으로부터 FTA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시킴

□ 위의 세 경우를 요약하면 FTA 이후 양국의 소비자가격은 다를 수 있으나, 생산자가격은 FTA 체결 후 동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됨

-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 후 양국이 서로 다른 대외관세를 비회원국에 부과하여도 회원국의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항상 동일하게 됨

<표 2>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국내시장가격 변화

	가정 [1]	가정 [2]	가정 [3]
A국의 생산자 가격	p^A	p^B	$p^A > p > p^B$
B국의 생산자 가격	p^A	p^B	$p^A > p > p^B$
A국의 소비자 가격	p^A	p^B	$p^A > p > p^B$
B국의 소비자 가격	p^B	p^B	p^B

2) 가정 [1]인 상태에서의 최적관세

□ 두 국가가 가정 [1]인 상태라는 가정에서 정재호(2000)와 정재호(2001)는 자유 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재호(2000)는 소국과 대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할 경우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재호(2001)는 소국과 소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7) 두 번째 경우에만 양국의 소비자가격이 동일하게 된다.

경우를 상정하여 최적 대외관세 및 가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음

- 동일한 수입재화에 대해 소국과 대국 모두에게 세계시장가격은 동일함
 - 따라서 이들 국가의 국내시장가격은 MFN 관세에 의해 어느 재화의 국내 시장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높을 수도 혹은 낮을 수도 있음

- 현재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위해 부과
 - 즉 관세 부과는 국내시장가격을 세계시장가격보다 높게 상승시켜 소비자의 잉여는 감소하고 반면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하게 됨
 - 또한 관세 부과로 국가는 관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지만 소국의 경우 이러한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면 관세 부과로 경제적인 왜곡이 발생하여 항상 전체 후생에서 손해를 보게 됨
 - 그럼에도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유치산업과 같이 일정기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농산물과 같이 비교역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⁸⁾ 등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협정 상대국인 B국의 대외관세가 A국보다 높다면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 A국 생산자는 상대국(B)의 시장가격이 A국보다 높기에 상대국에 무관세로 관세부담 없이 수출을 하게 됨
 - 따라서 가정 [1]에 의해 A국 생산자는 상대국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대외관세와 상관없이 상대국의 대외관세로 인한 높은 시장가격 혜택을 받게 됨
 - 그러므로 A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새로운 관세정책을 고려할 때 A국의 생산자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8) 비교역적·다원적 기능으로는 식량안보, 자연환경 보전, 경관효과, 생물 다양성, 농촌의 쾌적성, 홍수 조절, 토지보전효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 왜냐하면 자국의 생산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 곳에서 높은 이윤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A국은 자국의 소비자만을 고려하여 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곧 무관세(0)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 됨
 - 소비자만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소비자의 잉여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수입은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한 소비자 잉여 감소보다 항상 작게 됨
 - 따라서 저관세 부과 분야의 최적관세정책은 0을 택하는 것임
- 그러나 저관세 부과 분야를 가진 국가가 대국이고 협정 상대국은 소국⁹⁾인 경우에는 대국은 저관세 부과 분야에 대해 여전히 양(+)¹⁰⁾의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관세가 됨
- 이는 대국은 국제무역의 정의에 의해 세계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조건 개선효과(terms of trade effect)로 여전히 양의 관세를 부과
- 앞서 설명한 경우와 반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의 기존 대외관세가 협정 상대국의 MFN 관세보다 높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가입 이후에는 대외관세는 낮추는 것이 최적임을 증명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도 증가하게 됨
- 특히, 우리나라(A)의 관세가 높아서 그 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협정 상대국(B)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함

9) 협정 상대국이 대국인 경우는 Richarson(1995) 참고.

10) 자세한 사항은 정재호(2000, 2001) 참고.

-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에 A국은 이미 최적의 대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 상대국의 수입이 증가하여 그만큼 A국의 관세수입은 감소하게 됨
 - FTA로 인해 A국은 B국에 대외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가정 [1]에 의해 국내시장가격에도 변동을 주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A국이 대외관세를 높일 경우 국내시장가격이 상승하여 그만큼 B국은 더 많이 공급하게 됨
 - 대외관세 상승과 함께 B국이 더 많이 공급함은 관세수입의 감소는 전보다 더 커지게 됨
 - 따라서 이러한 B국의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이 A국의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A국은 대외관세를 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됨
- 결론적으로 가정 [1]의 상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최적관세정책은 관세수준을 낮추는 것임

3) 가정 [2]인 상태에서의 최적관세

- 한편, 두 국가가 가정 [2]인 상태라는 가정 아래 최적 관세수준을 살펴봄
- B국의 총생산이 A국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때문에 A국의 국내시장가격은 B국의 국내시장가격과 동일할 때까지 하락함
 - 따라서 양국의 국내시장가격은 동일하고, A국의 대외관세는 무의미함
 - 외형상 존재하기는 하나 모든 수입은 B국으로부터 이루어지므로 A국은 전혀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수입도 얻을 수 없음
 - 또한 A국이 B국의 대외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효과가 없게 됨
 - 왜냐하면 A국이 B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으므로 A국의 국내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그러나 A국이 B국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B국은 A국의 시장가격이 자국보다 낮기에 A국에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A국의 수입 수요는 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어 충족될 것임
 - 다시 말해 A국은 FTA로 관세 수입이 전혀 없다가 상대국인 B국의 관세 수준보다 아주 조금 낮게 부과함으로써 새롭게 관세수입을 얻게 됨
- 따라서 A국에는 B국의 관세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유인이 있음

□ 그러면 B국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면,

- B국은 A국의 수입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수출을 하고, A국에 수출하는 양만큼 B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해야 B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B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새로운 관세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 이때 A국이 자국의 대외관세를 낮춘다면, B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얻는 이득은 전혀 없게 됨
- 하지만 B국도 A국 관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면 다시 B국의 생산자는 A국에 수출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시 추가적인 관세수입이 발생하게 됨

□ 결론적으로 양국간에 서로 관세를 낮추고자 하는 유인으로 인하여 유일한 Nash 균형은 양국이 영(0)의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됨

Ⅲ.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1. 현행 관세율 구조

가. 기본관세율 구조

- 1983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기본적으로 차등관세율 체계
 - 차등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 품목별로 차별적인 관세율 적용
 - 관세를 통한 재정확보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양한 관세율 적용
 - 또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지원적인 차등관세율 체계는 필수적

- 그러나 수입대체사업 육성을 위한 완제품에 대한 높은 보호관세와 중화학공업 등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하는 문제점 초래
 - 결과적으로 원료, 중간재, 완제품 사이의 과도한 관세율 격차를 발생시켜 원료 및 중간재의 국산화 개발 의욕을 낮춤
 -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 초래

- 또한 민간주도적인 경제체제가 강조되면서 관세를 통한 산업 지원적 정책보다는 관세의 산업 중립적인 기능이 더 강조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1984년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

- 균등관세율 체계는 관세의 산업 중립적 기능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유도하여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 산업 차별적인 관세율 정책을 일시에 단일세율인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중심관세율을 설정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중심관세율이 적용되도록 관세율 개편 실시
 - 한편, 관세율이 크게 인하됨에 따라 관세율 인하예시제 시행

-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가 된 균등관세율 체계는 1984년에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 인하예시제에 의해 형성
 - 제1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84년에 시작하여 1988년에 종료
 - 기본적으로 20% 균등관세율을 중간재 및 소비재에 적용하고 기초원료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관세율 인하
 -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89년부터 시행되어 1994년에 종료
 - 1988년 당시 20%인 중심관세율을 1989년 15%, 1990년 13% 등 점차 중심세율을 인하하여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가 종료되는 1994년에는 8%의 중심세율 적용을 목표로 실행

<표 3> 제2차 관세율 구조 개편원칙

(단위: %)

		1988	1989	1990/91	1992	1993	1994
원료	비경쟁원료	5	1~2	1~2	1~2	1~2	1~2
	경쟁원료	10	5	5	5	4	3
중간재 및 완제품	중심세율(일반 공산품)	20	15	13	11	9	8
	경쟁력 확립 및 국산화 곤란 품목 (1차 가공품)	10~20	10	10	10	9	8
	(10~20)	(10)	(10)	(9)	(7)	(5)	
	사치성 소비재	30~50	20	16	13	10	8

주: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9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1990년도 방위세 폐지에 따라 인하예시제를 1년씩 순연하여 1994년에 종료됨.

자료: 정재호(2003)

- 2차례에 걸친 관세예시제 이후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6년에 관세율 개편이 이루어짐
- 1997년 관세율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짐
 - 첫째, 일부 원자재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세율 인하
 - 원자재 및 중간재의 경우, 3~5%로 관세율 인하
 - 둘째, 섬유·신발 등의 관세율 부분 인상
 - 섬유류 등은 경쟁국 관세율과 양허세율에 따라 10%, 13%, 16%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섬유·의복과 신발 등 7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 인상
- 2000년 관세율 개편은 일부 농산물과 중간재 품목에 대해 실시
 - 일부 농산물에 대해 종가·종량 선택세 적용
 - 중국산 저가 수입농산물의 수입을 조절하기 위해 당근과 버섯, 파, 고사리, 들깨 등 7개 채소 가공품에 대하여 종가·종량 선택세를 적용
 - ITA 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중간재에 대한 세율 인하
 - 폴리 실리콘, 흑연도가니 등의 관세율을 8%에서 3~5%로 인하
- 2006년 관세율 개편은 WCO 제4차 HS협약 개정안(HS 2007)을 적용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원자재의 무세화를 실시
 - DDA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관세율 개편보다는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기초원자재 등 308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재 등 114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된 품목 및 잠정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전환

□ 우리나라 공산품 관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

<표 4>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가 공 도 별		1983	1984	1988	1989	1994	2000	2007
중심세율		20	20	20	15	8	8	8
원료	비경쟁원료	5~30	5~10	5	1~2	1~2	1~2	0~3
	경쟁원료		10	10	5	3	3~4	
중간재	경쟁력확립(1차가공품)	20~50	20~30	10~20	10	8(5)	5~8	5~8
완제품	일반 공산품	40~80	40~50	20~30	15	8	8	8
	경쟁력 취약						10~16	10~16

자료: 정재호(2008).

나. 기본관세율 구성

- 관세 인하예시제가 실시되면서 중심세율을 중심으로 관세율이 분포
 - 제1차 관세 인하예시제에서 제시한 20% 중심세율에 의해 1984년 41.9%의 품목에 기본관세율 20% 적용
 - 1989년 기본관세율 20%가 적용되는 비중이 61.8%로 증가
 - 제2차 관세 인하예시제를 거치면서 1994년 이후 중심관세율이 8%로 낮아짐
 - 1994년 8% 중심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은 60%

- 관세 인하예시제가 종료된 이후 1998년 8%의 중심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된 품목의 비중은 63.3%

<표 5>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4년 이전)

(단위: %)

1983	세율별	0	5	10	15	20	25	30	40	50	100	총량		
	구성비	6.8	3.5	10.8	11.2	29.6	3.3	1.4	8.7	10.6	0.39	0.5		
1984	세율별	0	5	10	15	20	25	30	40	50	80	90	100	총량
	구성비	3.7	5.9	14.6	5.1	41.9	0.3	4.5	13.2	2.4	0.1	0.5	0.4	0.4
1988	세율별	0	5	10	15	20				30	50	100	총량	
	구성비	3.6	5.6	16.6	3.9	61.8				4.7	3.0	0.4	0.5	
1994	세율별	0	1~3	5	8			10	20	30	40	50	총량	
	구성비	5.5	15.6	11.5	60.0			0.3	1.4	2.8	0.9	1.4	0.7	

자료: 박상태(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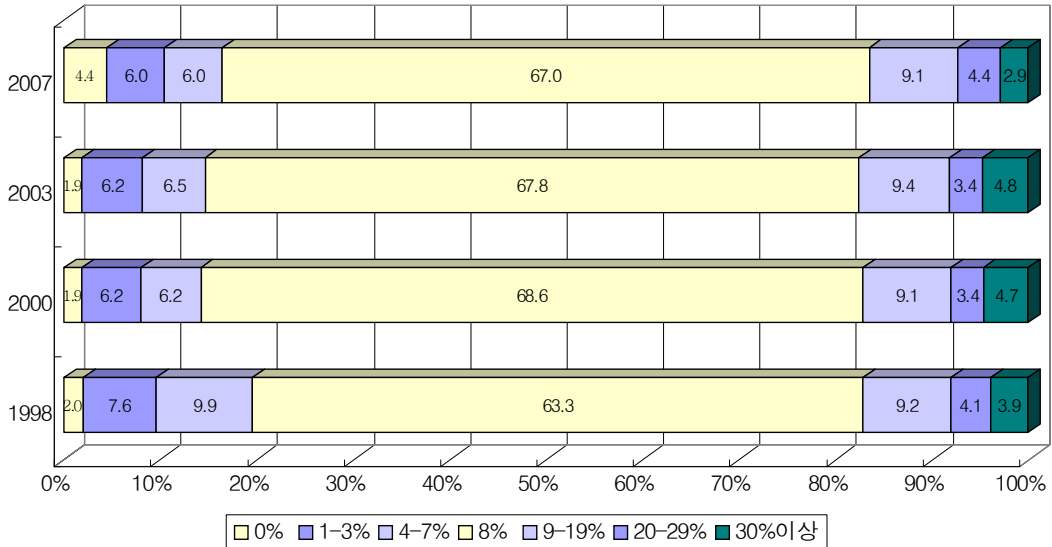
- 2000년 이후에는 8%의 중심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된 품목의 비중은 약 68%
 - 2007년에는 67% 수준
 - 매년 품목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구성비도 변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함
 - 2007년에는 8% 적용 품목 수가 7,791개로 2004년의 7,601개보다 190개 품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수가 더 증가하여 전체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관세 인하예시제를 통한 8% 중심세율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기본 관세율 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2006년에 이루어진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세율 인하로 기본관세가 무세(0%)가 적용되는 품목은 4.4%로 2배 이상 크게 증가
 - 30% 이상의 고관세 적용 품목 비중은 2003년 4.8%에서 2.9%로 낮아짐
 - 3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의 세율이 낮아지면서, 관세율 20%의 품목 비

중이 높아지는 현상 발생

[그림 3]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8년 이후)

(단위:%)



자료: 정재호(2008)

2.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

-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WTO DDA 협상, FTA 체결 등의 경제적 환경 변화로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음
- 이러한 관세율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 정재호(2008)는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이용하여 이에 대해 분석
 -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관세율 구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개별 산업들의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 결론적으로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 단일관세율 구조 그리고 중심관세율 구조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짐
 - 최적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관세율을 크게 변경시켜야 하지만, 그 결과에 의한 후생증대도 크지 않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경우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 단일관세율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어 품목별로 관세율이 인하 혹은 인상되는 분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정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 유지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짐

가. 제약조건과 분석시나리오 설정

-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¹¹⁾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제약하의 최적화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음
 - 즉, 주어진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대표적 소비자의 후생함수를 최대화시키는 최적관세율을 도출하고자 함

11) 본 연구에서의 최적관세율이란 경제적·정치적 여건 혹은 정부의 예산제약 등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약조건 아래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관세율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사회적 후생은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임

Max 사회적 후생

s.t. 1) 일반균형조건

2) 정책적 제약조건

□ 정책적 제약조건으로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여건을 감안한 조건들로 우선 정부의 실질세수는 변화하지 않고 관세 수입도 정부 세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함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실질세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관세율 변화 등 정책의 변화로 생산요소와 재화들 간의 상대가격체계가 바뀌어 자원재분배가 발생하여 정부의 실질 세수입도 변화하게 됨

- 하지만 실질세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제자료를 이용하여 최적관세율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임

- 그 당시의 정부의 공공재 공급 등 개별적 지출행위가 관세율 변화에 의한 상대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준은 유지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그 당시 지출행동을 보장해 주도록 설정하는 것임¹²⁾

○ 한편, 정부의 세수입 중 관세 세수가 일정부분을 담당한다고 가정함

- 이 가정은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재정적 기능을 일부 인정함을 의미함

□ 다음으로 관세율 수준과 관련된 제약조건으로, WTO 양허세율과 농산물 및 음식료품에 대한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한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율을 수입재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¹³⁾ WTO 양허세율은 우리나라가

12) 본 연구에서 정부의 효용함수는 콥-더글러스 함수에 의해 기술된다고 가정함. 콥-더글러스 함수는 세수 규모, 가격체계에 상관없이 각 재화별 명목지출액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임.

13) WTO 비회원국과의 교역에서는 WTO 양허세율이 적용받지 않아 그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우리나라 교역의 거의 전부가 WTO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율 정책에 중요한 제약조건 중의 하나임

- 개별 산업별 평균 양허세율은 개별 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 WTO 양허세율은 HS 세번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모형을 사용하므로 산업별로 묶어 평균 양허세율을 계산하여 사용함

□ 또한 국내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관세율 제약조건으로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 수준을 들 수 있음

- 농산물 및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기준연도의 실적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산업의 관세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
- 특히, 몇몇 주요 농산물들은 WTO 양허세율이 곧 실행세율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의 세율을 실행세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농산물 관세율은 농민층을 비롯해서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관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짐

□ 구체적으로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관세인하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2가지 시나리오 설정

- 첫째, 2003년 실적세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
- 둘째, 관세율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제약조건을 설정함

□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런 제약조건들이 없다면 모형에서의 소비자 후생은 분명 증가하게 됨

-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제약들을 고려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을 무시하고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

관세율 부과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

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고려하기로 함

<표 6> 기존 관세율 수준 및 양허세율 제약(2003년)

(단위: %)

산 업	기존 관세율 (실적세율)	WTO 관세율제약 (양허세율)
농 립 수 산 품	8.60	54.35
광 산 품	1.71	4.17
음 식 료 품	14.90	61.02
섬 유 및 가 죽 제 품	6.23	19.34
목 재 및 종 이 제 품	3.15	5.73
인 쇠, 출 판 및 복 제	0.58	4.75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52	9.61
화 학 제 품	4.02	9.85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37	10.52
제 1 차 금 속 제 품	1.48	5.68
금 속 제 품	4.43	12.71
일 반 기 계	3.95	9.05
전 기 및 전 자 기 기	1.05	5.31
정 밀 기 기	3.24	8.37
수 송 장 비	3.34	7.02
가 구 및 기 타 제 조 업	5.51	10.90

주: WTO 관세율 자료대로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양허관세율에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적용 세율이 포함되어 있어 양허세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나. 분석 결과

1) 최적 관세율과 후생변화

-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에서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경우 대표적인 가계로 표현되는 후생수준은 증가

- 여기서 차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이란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을 도출하여 나타나는 관세율 구조 의미
 - 이론적으로 현재의 관세율 체계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체계로 이행시킬 경우 차등관세율 체계가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됨
- 최적 관세율 체계로 제시된 차등관세율 체계는 현재의 관세율 구조와 차이가 있었음
- 우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존의 관세율로 고정할 경우, 관세율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14개 산업군 중 6개 산업군에 대해 무세를 최적관세율로 제시
 - 광산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 제시
 -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비금속광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상이 제시
 -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만이 기존과 유사한 관세율 수준을 유지
- 최적세율로 무세를 제시한 산업으로는 광산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등임
- 반면 석유 및 석탄제품은 기존의 관세율 1.52%에서 8.9%로,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05%에서 WTO 양허세율 수준인 5.3%로 대폭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수송장비 산업의 최적관세율은 기존 관세율과 거의 동일하게 3.3%가 제시되었으며, 정밀기기 산업도 기존 관세율 3.24%와 거의 다르지 않는 3.3%가 최적관세율로 제시되었음

-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세화 및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율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증대는 동등변이(Equivalent Variation) 개념으로 0.046%에 불과
 - 즉, 모형에서 제시한 최적관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별로 대폭적인 관세율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후생증대는 미미함

- 결론적으로 관세율 체계의 변화므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증대는 0.046%에 불과
 - 즉, 모형에서 나타난 최적관세율 체계로 이행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관세율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후생증대는 미미하였음

- 관세율 제약 중의 하나인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최대 10% 감축할 수 있다는 제약을 둔 경우의 최적관세율을 계산하면,
 - 우선 가계의 후생증대는 0.051%로 나타나 예상대로 농산물 관세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약간의 후생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음¹⁴⁾.
 - 다른 산업들의 최적관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석유 및 석탄제품의 최적관세율이 8.9%에서 9.6%로 WTO 양허수준까지 인상시킬 것이 제안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였음

14)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에 대해 정책적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의 최적관세율은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모두 무세가 최적관세율이고 이 경우 가계의 후생증가는 0.078%였음.

<표 7>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

(단위: %)

산 업	기존 실적 관세율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유지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까지 인하
농 립 수 산 품	8.60	8.6	7.7
광 산 품	1.71	0.0	0.0
음 식 료 품	14.90	14.9	13.4
섬유 및 가죽제품	6.23	0.9	1.3
목재 및 종이제품	3.15	0.0	0.0
인쇄, 출판 및 복제	0.58	0.0	0.0
석유 및 석탄제품	1.52	8.9	9.6
화 학 제 품	4.02	0.0	0.0
비금속광물제품	5.37	5.8	5.8
제1차 금속제품	1.48	0.4	0.8
금 속 제 품	4.43	0.0	0.0
일 반 기 계	3.95	2.6	2.4
전기 및 전자기기	1.05	5.3	5.3
정 밀 기 기	3.24	3.3	3.4
수 송 장 비	3.34	3.3	3.5
가구 및 기타제조업	5.51	0.0	0.0
가계의 후생증가	기준	0.046	0.051

-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최적관세율 체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하(약 86%)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상(430%)을 들 수 있음
- 이론적으로 무세화가 제시된 산업 중 광산품과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은 현실적으로도 무세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음
 -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품의 무세화는 별 문제 없음
 -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의 기존 실적세율이 0.58%로 매우 낮고 이미 양허

세율이 무세화된 품목들이 있음

- 반면, 목재 및 종이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기존 실적세율이 3~5.5%로 이들 산업의 무세화에는 무리가 있음

- 섬유 및 가죽제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임
 -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중심세율 8%에서 벗어나 13~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적세율도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6.23%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약 86%정도 대폭 인하하여 새로운 실적세율이 0.9~1.3% 수준으로 감축되면 섬유산업이 이와 같은 급격한 관세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 반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WTO 양허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음
 - 즉, 섬유산업의 관세율은 낮추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ITA협정으로 이미 일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이 무세화되었고, 향후 WTO DDA협상에서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 인상은 어려운 실정¹⁵⁾

- 이 밖에 석유 및 석탄제품의 관세율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세수 중립제약과 관세세수의 일정 비중 유지를 가정함으

15) DDA 협상에서 무세화가 언급되는 분야로는 자동차와 그 부품, 자전거와 그 부품, 화학, 전기 및 전자제품, 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보석 및 귀금속, 기초원자재(raw materials), 스포츠 용품, 섬유, 의류 및 신발 등 12개 분야가 있음. 이 중 우리나라는 전기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세화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됨

-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과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설정
- 구체적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기기의 관세율은 기존의 실적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계산

<표 8>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섬유, 전자 관세율에 제약 가정)

(단위: %)

산 업	기존 실적세율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유지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 인하
농 립 수 산 품	8.60	8.6	7.7
광 산 품	1.71	0.0	0.0
음 식 료 품	14.90	14.9	13.4
섬유 및 가죽제품	6.23	3.1	3.1
목재 및 종이제품	3.15	3.8	5.7
인쇄, 출판 및 복제	0.58	0.2	0.4
석유 및 석탄제품	1.52	9.6	9.6
화 학 제 품	4.02	1.3	2.1
비금속광물제품	5.37	8.9	8.7
제 1 차 금 속 제 품	1.48	3.8	3.8
금 속 제 품	4.43	0.0	0.0
일 반 기 계	3.95	4.2	3.8
전 기 및 전 자 기 기	1.05	1.0	1.0
정 밀 기 기	3.24	6.1	5.9
수 송 장 비	3.34	4.5	4.6
가 구 및 기 타 제 조 업	5.51	0.0	0.0
가 계 의 후 생 증 가	기준	0.038	0.042

주: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은 현재의 관세율 수준보다 높을 수 없다는 가정을 이용하였음.

- 우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존의 관세율로 고정할 경우, 가계의 후생증대는 0.038%였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최대 10% 인하할 수 있다는 제약을 둔 경우에는 0.042%로 나타났음
 - 이론적으로 제시된 최적관세율 구조는 우선 광산품, 금속제품, 그리고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 대해서만 무세화가 제안되었고, 인쇄, 출판 및 복제와 화학제품의 관세율은 인하할 것이 제시되었음
 - 그 밖의 관세율은 모두 인상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즉,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인하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약 7개 산업의 최적관세율은 기존 실적세율보다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세율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추가됨으로써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를 도출한 결과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증대는 이전의 경우에 비해 더 작아짐
 - 현실적 제약이 추가적으로 최적관세율 구조에 더 많은 제한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만큼 가계의 후생증대도 적어지게 됨

-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경우 가계의 후생증가가 예상보다 적었음
 - 특히,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할 경우 후생증대는 더욱 작아짐

- 따라서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 비용을 감안하면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3. 균등과 중심관세율 구조 비교

-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인하하면서, 균등(단일)관세율 구조로 전환하거나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2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균등 혹은 단일관세율 구조로의 전환
 - 새로운 관세율 수준으로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안
 - 이 경우 기존 관세율이 새로운 단일관세율 수준보다 낮은 일부 산업의 경우 관세율 수준이 인상되게 되거나
 -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을 설정하고 기존에 이미 이 수준보다 낮은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 수준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일정 비율 낮추어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대안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가. 분석 시나리오 설정

-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인하는 것은 중심세율을 현재의 8%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새로운 중심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 우선 새로운 중심세율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서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WTO 협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WTO DDA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DDA 협상이 성사 되었을 때의 관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중심세율을 설정 분석

- DDA 협상은 당초 2001년 11월에 시작하여 2004년 12월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모든 회원국들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 변화에 대한 최근 이루어진 연구로는 정재호·박순찬(2006)이 있음
- 정재호·박순찬(2006)에 의하면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6년 기준으로 6.32%에서 DDA 이행 이후 2.79~4.4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¹⁶⁾
 - 즉,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은 현재보다 30.2~55.8%인하되는 것을 의미함
 -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작성
- WTO DDA 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관세율이 급격하게 인하되는 시나리오와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
- 시나리오 A는 DDA 협상 결과 가장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어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이 30.2%(= 441/632) 인하된 경우를 가정하였음
- ① 기존 평균관세율을 30.2% 인하한 1.72%를 단일관세율 수준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 ② 기존 평균관세율을 30.2% 인하한 1.72%를 단일관세율로 도입하되 기존 관

16)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NAMA)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순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위스 공식 계수 5와 10, 그리고 미양허 품목에 대한 constant non-linear mark-up 비율 5%p와 30%p를 적용하였음. 구체적으로 스위스 계수로 10을 적용하고 미양허 품목의 mark-up으로 30%p를 적용한 가장 점진적인 경우 DDA 이후 평균 실행세율은 4.41%가 되며, 가장 급진적인 경우인 스위스 공식 계수 5를 적용하고 미양허 품목의 mark-up으로 5%p를 적용하면 DDA 이후 평균 실행세율은 2.79%가 됨. 자세한 내용은 정재호·박순찬(2006) 참고.

세율이 1.72%보다 낮다면 기존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③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기존 관세율 수준에서 동일하게 30.2%씩 인하 방안
 -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 유지

□ 시나리오 B는 DDA 협상으로 가장 급격하게 관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상정

○ 즉,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이 55.8%(= 279/632) 인하되는 것을 가정하였음

- ① 기존 평균관세율을 55.8% 인하한 1.09%를 단일 관세율 수준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 ② 1.09%를 단일관세율로 도입하되 기존 관세율이 1.09%보다 낮으면 기존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③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기존 관세율 수준에서 모두 55.8%씩 인하하는 방안

<표 9> 중심관세율 인하 효과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A	A-1	기존 평균관세율을 30.2% 감축한 1.72%를 전체 산업에 단일 관세율로 적용
	A-2	1.72%를 단일관세율로 적용하되 기존 관세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 유지
	A-3	기존 개별 관세율을 30.2%씩 인하
시나리오 B	B-1	기존 평균관세율을 55.8% 감축한 1.09%를 전체 산업에 단일 관세율로 적용
	B-2	1.09%를 단일관세율로 적용하되 기존 관세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 유지
	B-3	기존 개별 관세율을 55.8%씩 감축

주: 1)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논의되는 감축폭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앞서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함.

2) 현재 중심관세율을 8%를 시나리오 A처럼 30.2%(=441/632) 감축할 경우 5.58%가 되며, 시나리오 B처럼 55.8%(=279/632) 감축할 경우 3.53%가 됨.

나. 분석 결과

1) 관세율 수준과 후생변화

- 앞서 DDA 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관세율 인하폭을 감안하여 2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를 설정하였음
 - 시나리오 A는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현재보다 30.2% 인하
 - 시나리오 B는 기존 관세율을 55.8% 인하하는 시나리오임

-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에 의한 대표적인 가계의 후생증가를 비교해 보면, 시나리오 A에서 후생증가는 0.213~0.268%였고, 시나리오 B에서의 후생증가는 시나리오 A보다 더 커서 0.401~0.404%였음
 - 시나리오 B에서의 관세인하 폭이 시나리오 A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손실이 그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발생

- 시나리오 A-1과 B-1은 전체 산업에 대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시나리오 A-3과 B-3은 기존의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것임
 - 이 두 가지 경우의 후생증가 수준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A-3과 B-3의 후생증가는 각각 0.216%와 0.403%로 시나리오 A-1과 B-1의 후생증가 0.213%와 0.401%보다 아주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균일화하는 균등관세율 체계로 이동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도 하지만 일부 산업의 관세율은 인상되기 때문에 발생
 -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여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되면서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보다는 인하되는 산업이 더 많고 그 인하폭도 더 커서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됨

-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변화라는 측면에서 전체 산업에 새로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경우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단일관세율 체계로 인해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산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의 변화가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보다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따라서 정책적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단일관세율 혹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가 인상되거나 혹은 인하되면서 발생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짐
 -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거나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낮출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수송장비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A-2와 B-2는 기존 관세율이 단일관세율 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임
 - 이 시나리오의 후생 증가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A-2와 B-2의 후생 증가는 각각 0.268%와 0.404%임
 - 이러한 후생 증가는 기존 관세율을 단일관세율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 A-1과 B-1의 후생 증가보다 더 큼
 - 이는 단일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관세율이 더 낮기 때문임
 - 즉, 단일관세율 체계로 인해 관세율이 인상되는 산업이 없기 때문임
 - 그러나 관세율이 급격하게 인하되는 시나리오 B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들이 단일관세율 수준까지 관세가 인하되어 후생수준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

<표 10> 시나리오별 관세율 수준

(단위: %)

	기존 실적세율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A-1	A-2	A-3	B-1	B-2	B-3
농 립 수 산 품	8.60	8.60	8.60	8.60	8.60	8.60	8.60
광 산 품	1.71	1.72	1.71	1.19	1.09	1.09	0.75
음 식 료 품	14.90	14.90	14.90	14.90	14.90	14.90	14.90
섬유 및 가죽제품	6.23	1.72	1.72	4.35	1.09	1.09	2.75
목재 및 종이제품	3.15	1.72	1.72	2.20	1.09	1.09	1.39
인쇄, 출판 및 복제	0.58	1.72	0.58	0.41	1.09	0.58	0.26
석유 및 석탄제품	1.52	1.72	1.52	1.06	1.09	1.09	0.67
화 학 제 품	4.02	1.72	1.72	2.81	1.09	1.09	1.78
비금속광물제품	5.37	1.72	1.72	3.75	1.09	1.09	2.37
제1차 금속제품	1.48	1.72	1.48	1.04	1.09	1.09	0.66
금 속 제 품	4.43	1.72	1.72	3.09	1.09	1.09	1.95
일 반 기 계	3.95	1.72	1.72	2.7	1.09	1.09	1.74
전기 및 전자기기	1.05	1.72	1.05	0.73	1.09	1.05	0.46
정 밀 기 기	3.24	1.72	1.72	2.26	1.09	1.09	1.43
수 송 장 비	3.34	1.72	1.72	2.33	1.09	1.09	1.47
가구 및 기타제조업	5.51	1.72	1.72	3.85	1.09	1.09	2.43
가계의 후생증가	기준	0.213	0.268	0.216	0.401	0.404	0.403

<표 11> 시나리오별 관세 변화율

(단위: %)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A-1	A-2	A-3	B-1	B-2	B-3
광 산 품	0.58	0.00	-30.41	-36.26	-36.26	-56.14
섬유 및 가죽제품	-72.39	-72.39	-30.18	-82.50	-82.50	-55.86
목재 및 종이제품	-45.40	-45.40	-30.16	-65.40	-65.40	-55.87
인쇄, 출판 및 복제	196.55	0.00	-29.31	87.93	0.00	-55.17
석유 및 석탄제품	13.16	0.00	-30.26	-28.29	-28.29	-55.92
화 학 제 품	-57.21	-57.21	-30.10	-72.89	-72.89	-55.72
비금속광물제품	-67.97	-67.97	-30.17	-79.70	-79.70	-55.87
제1차 금속제품	16.22	0.00	-29.73	-26.35	-26.35	-55.41
금 속 제 품	-61.17	-61.17	-30.25	-75.40	-75.40	-55.98
일 반 기 계	-56.46	-56.46	-31.65	-72.41	-72.41	-55.95
전기 및 전자기기	63.81	0.00	-30.48	3.81	0.00	-56.19
정 밀 기 기	-46.91	-46.91	-30.25	-66.36	-66.36	-55.86
수 송 장 비	-48.50	-48.50	-30.24	-67.37	-67.37	-55.99
가구 및 기타제조업	-68.78	-68.78	-30.13	-80.22	-80.22	-55.90

- WTO DDA 협상 결과에 의해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아지면 관세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실시하였던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도입하여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도록 하여 자원 재배분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DDA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즉시 인하되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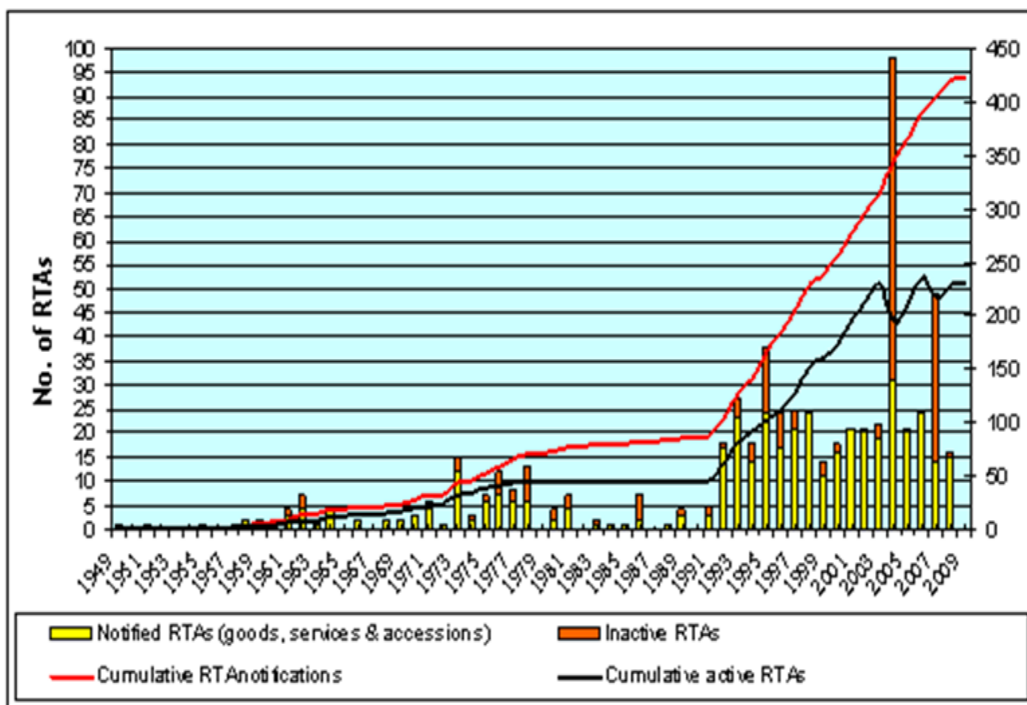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한 CGE 모형은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함
 - 특히, 대체탄력성의 가정에 따라 CGE 모형 분석 결과도 변화
 - 따라서 CGE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GE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는 이유는 관세율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전체적인 효과 분석에 중요한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

IV. FTA 협정세율과 기본관세율 관계

1. 주요국의 FTA 체결 이후의 관세율 변화

-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되고 있는 추세
 -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 124건
 - 2008년말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 421건
 - 현재 검토중, 협상중, 협상발효예정인 지역무역협정 : 약 400건
 - 이 중 약 90%가 FTA

[그림 4]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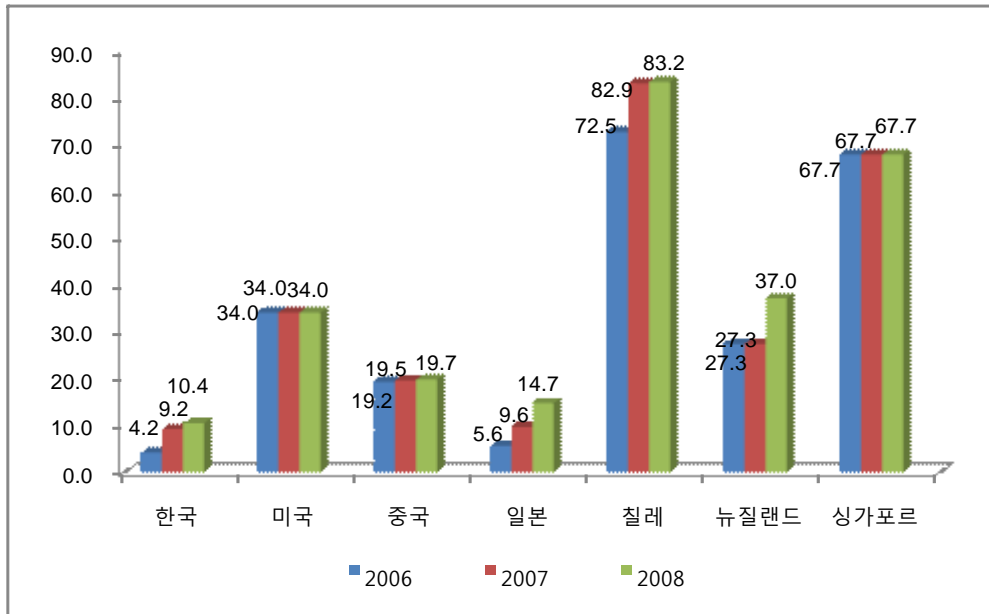
자료: WTO

- 칠레는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교역비중도 8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에 관세율을 1%p 인하
 - 2002년까지 7%인 관세율을 2003년부터 6%로 인하
 - 단일관세율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유지
 - 칠레는 단일관세율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부 품목(0207)에 대해서만 단일관세율 적용 예외

-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 전체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우선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규모가 자국의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
 - 미국의 경우 NAFT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NAFTA 체결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진행으로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효과인지 구분이 불분명함
 - 싱가포르의 대부분 무세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움
 - 또한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그림 5]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국에 대한 교역 비중

(단위: %)



자료 : 한국무역협회(2009) 2009년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망

2. FTA 발효와 연계된 중심관세율 인하

□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타결된 FTA 중 한미 FTA 제외한 4개의 FTA가 발효 중

<표 1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체결 수	국가(지역)
타결된 FTA	5	칠레 (2004), 싱가포르 (2006), EFTA (2006), 미국 (2007 서명) ASEAN (상품 2007, 서비스서명)
추진중인 FTA	7	ASEAN(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GCC
기타 여건조성 중	7	중국,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페루, 터키, 러시아

자료: 외교통상부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규모가 큰 국가(지역)는 현재 아세안을 꼽을 수 있음
 -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1.7%, 수입의 약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추후 FTA 발효를 앞두고 있거나 협상 완료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EU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교역 비중은 약 18%
 - 미국 8.8%, EU 9.2%
 - 아세안, 미국, EU를 합친 전체 수입비중은 약 27.4%

<표 13> 우리나라 6대 교역지역

(단위: %, 십억달러)

	GCC	중국	일본	ASEAN	EU	미국
수입비중	19.7 (1)	17.7 (2)	14.0 (3)	9.4 (4)	9.2 (5)	8.8 (6)
수출비중	3.6 (6)	21.7 (1)	6.7 (5)	11.7 (3)	13.8 (2)	11.0 (4)
무역수지	-70.5	14.5	-32.7	8.4	18.4	8.0

주: 2008년 수출입통계 기준이며, ()안은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상 중인 GCC는 원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입 중 약 19.7%를 차지
 - GCC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나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하지만 GCC는 다른 국가(지역)들과 달리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수입에 집중되어 있어 특별한 고려 필요

- 향후 중국, 일본 등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80%가 FTA 체결국가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

- 우리나라 수입액 기준 상위 6개 국가(지역)의 수입비중은 총 약 78.8%
- GCC를 제외할 경우 약 59.1%

- 미국, EU, GCC, 일본, 중국 등과의 FTA가 확대되어 우리나라 교역규모의 약 60~80%를 차지하면 산업보호 위주의 관세율 정책기능은 약화될 것이 자명

- 그러나 FTA 확산체제로 가기 전까지는 관세율 정책은 여전히 FTA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
 - 기본관세율 구조는 그 바탕이 됨

- FTA 체결이 이루어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체계가 적용됨

-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영향을 줄 만큼 FTA가 발효된 상황은 아님
 -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규모는 약 10% 정도

-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교역 비중은 아세안을 합쳐 약 30%
 - 미국 8.8%, EU 9.2%
 - 아세안, 미국, EU를 합친 전체 수입비중은 약 27.4%

- 따라서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의 중심관세율 인하를 DDA 협상과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일시에 FTA 특혜세율로 수입되는 것은 아님

-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약 44% 정도만이 특혜세율 혜택을 누리고 있음

<표 14> FTA 특혜세율 적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2008(1~9월)		
	수입 실적	특혜 적용	적용 비율	수입 실적	특혜 적용	적용 비율	수입 실적	특혜 적용	적용 비율
칠레	3,732	1,652	44.3	4,156	1,797	43.2	3,572	1,553	43.5
싱가포르	4,874	196	4.0	6,662	299	4.5	6,474	171	2.6
EFTA	820	261	31.8	3,551	1,455	41.0	3,255	1,041	32.0
아세안	-	-	-	14,988	1,299	8.7	29,044	8,199	28.2
FTA 수입계	9,426	2,109	22.4	25,331	4,850	19.1	35,871	10,964	30.6
전체수입(비중)	309,382 (3.0%)			356,846 (7.1%)			344,552 (10.4%)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8년 10월 22일)

- 앞서 언급하였듯이 FTA와 함께 우리나라 중심관세율 수준을 결정할 중요한 DDA협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
- DDA협상에 의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요인을 흡수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으로 FTA가 체결되지 않은 역외국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정책임을 밝히고 있음
 - DDA 협상을 통한 중심관세율 인하를 실시할 경우 FTA 체결로 인해 비 FTA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진행됨

- 만약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이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중심관세율 목표를 가지고 일차적인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실시할 수도 있음
- 그 이후 중국과 일본이 포함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될 때 중심관세율 수준에 대한 재논의를 고려할 수 있겠음
 -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 관세 철폐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중심관세율 수준 조정 논의
- 그리고 기본관세율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면, FTA로 인해 FTA 체결국가로의 무역전환이 심화되고, 높은 세율 격차에 따른 FTA 미체결 국가와의 과세 형평성 논쟁과 이로 인한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DDA 협상으로 인한 중심관세율 인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중심관세율 인하를 통해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FTA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외국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체계가 적용됨
 - FTA가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에 맞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 또한 향후 진행될 WTO 다자간 관세협상에서의 협상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3.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정책

- 중간재 관세율 정책은 항상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었음
 - 중간재에 대해 관세 유지를 통해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것인지
 - 아니면 무세화를 통해 중간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

- 여기에 추가적으로 FTA 체결은 원재료, 완제품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산품의 관세율을 철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향후 중간재와 완제품간의 세율 불균형 논쟁이 발생함

- 따라서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정책은 FTA 시대에 더욱 중요한 논의 대상이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가. 가공단계별 경사관세구조

- 우리나라는 8%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1984년 이후 산업 독립적 균등관세율 체계 지향

- 기본관세율은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원자재-중간재-완제품에 대해 경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원자재보다는 중간재에 그리고 중간재보다는 완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즉, 가공도에 비례해서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것을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라고 함
 -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경사관세율 구조를 채택

- 이런 경사관세율 구조를 채택하는 이유는 완제품에 대한 관세 이외에 완제품에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의 수입 관세까지 고려하여 최종생산물의 생산과정 자체에 대한 보호 정도를 높이기 위함
- 우리나라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세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원자재에 대해서는 0~3%의 관세 부과
- 중간재에 대해서는 5~8%의 관세를, 그리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8%의 중심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완제품 중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구분되는 섬유 등에 대해서는 10~1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15>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가 공 도 별		1983	1984	1988	1989	1994	2000	2007
중심세율		20	20	20	15	8	8	8
원료	비경쟁원료	5~30	5~10	5	1~2	1~2	1~2	0~3
	경쟁원료		10	10	5	3	3~4	
중간재	경쟁력확립(1차가공품)	20~50	20~30	10~20	10	8(5)	5~8	5~8
완제품	일반 공산품	40~80	40~50	20~30	15	8	8	8
	경쟁력 취약						10~16	10~16

자료: 정재호(2008).

나. 중간재 수입비중의 특징

-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비중의 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둘째, 중국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은 일본과 중국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EU, 미국, 아세안 순서
 - 2005년 일본과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약 49%
 - EU 약 11%, 미국 약 10%, 아세안 약 6%
 - 이들 5개 국가(지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약 76%
 - 2008년 일본과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약 54%
 - EU 약 9%, 미국 약 7%, 아세안 약 6%
 - 이들 5개 국가(지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약 77%

-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2005년 30.3%에서 2008년 26.9%로 하락
 -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2005년 18.9%에서 2008년 27.5%로 상승
 -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도 하락
 -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5년 10.1%에서 2008년 6.6%로 하락
 - 아세안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

<표 16> 주요국의 공산품 중간재 수입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ASEAN	5.87	6.10	5.88	6.25
EU	11.08	10.15	9.90	9.33
중 국	18.89	20.71	23.52	27.54
일 본	30.31	30.13	28.47	26.85
미 국	10.12	8.41	8.23	6.60
중간재	100.00	100.00	100.00	100.00

- 이와 비교하여 최종재 수입은 이들 5개 국가(지역)의 수입비중은 약 80~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일본 24.6%, 중국 18.7%, 미국 16.4%, EU 15.8%
 - 2008년 중국 24.4%, 일본 18.7%, EU 16.3%, 미국 12.2%
 - 2005년과 2008년을 비교하여 일본과 중국의 수입비중이 뒤바뀜
 - 미국의 수입비중은 감소함

- 최종재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05년 24.6%에서 2008년 18.7%로 하락
 - 다만,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

<표 17> 주요국의 공산품 최종재 수입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ASEAN	9.36	8.83	9.09	9.33
EU	15.76	15.30	16.36	16.28
중 국	18.71	20.56	23.26	24.44
일 본	24.63	21.66	19.49	18.68
미 국	16.42	16.04	14.61	12.20
최종재	100.00	100.00	100.00	100.00

- 중간재에 대한 관세징수액을 비교해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의 관세징수액 비중이 전체 수입액 비중보다 낮음
- 추정하건데, 관세율이 낮은 중간재 위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예상됨
 - 반면 EU, 미국, 일본 등의 관세징수액 비중은 전체 수입액 비중보다 높음
 - 일본의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은 감소하지만 관세징수액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이는 품질로 인해 관세율과 상관없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가 존재함을 의미함

<표 18> 주요국의 공산품 중간재 관세징수액 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ASEAN	9.17	8.93	7.99	5.69
EU	13.94	13.41	14.30	14.75
중 국	18.60	20.17	21.15	22.29
일 본	28.92	28.96	29.80	32.15
미 국	12.54	10.54	10.70	11.09
중간재	100.00	100.00	100.00	100.00

-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EU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FTA 무세화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중간재 수입이 다시 미국과 EU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현상이 단기적인 현상인지 중장기적인지에 따라 관세율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미국과 EU와의 FTA 체결 이후에도 중국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간재 관세율 변화의 필요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감소세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되는 단순 조립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음

다. 정책방향

- 앞선 논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무세화
 - 최종재는 중심세율 수준으로 수렴
- 따라서 가공단계별 관세율 차이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는 중간재 관세율에 관한 논의로 압축됨

- 최종재에 대한 관세 수준이 낮아질수록 중간재에 대해 별도의 관세율 수준을 지정할 필요성이 낮아짐
- 중간재에 대해 별도의 관세율 수준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하는 것을 고려
 -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는 중간재
 - 예를 들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 등
 -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간재
 -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 등 관세의 산업보호적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
 - 또는 관련 최종재가 무세이면서 수출재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선박처럼 최종재가 거의 대부분 수출될 경우 수출 환급제도로 인해 중간재 등의 관세율은 최종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양(+)
의 관세를 유지해도 무방함
 - 이런 양(+)
의 관세는 결국 국내 중간재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러한 중간재의 관세율 체계는 향후 중심관세율 구조에도 적합한 정책
- FTA 체결로 인해 중간재와 최종재의 공산품이 모두 관세가 철폐되어 중간재와 최종재간의 세율 불균형 논쟁이 발생함
- 그러나 여러 국가(지역)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역관세 논쟁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
 -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일한 중간재가 여러 최종재에 사용되고 있어 정책당국에서 인위적으로 역관세를 시정하기 어려움

- 개별적인 FTA로 인해 동일한 중간재에도 여러 가지의 관세율이 존재하고 최종재도 마찬가지로 현상 발생
- 향후 중심관세율 인하는 이러한 역관세 문제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생산이 최종재 만큼 혹은 최종재보다 더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
 - 고부가가치의 중간재 생산은 최종재 생산보다도 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최종재인 자동차 생산기술 발전은 곧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과 일맥상통
- 미국, 일본, EU 등의 중간재 관세율은 최종재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높았음
 - 미국과 일본은 중간재 관세율이 최종재 관세율보다 높음
 - EU는 중간재와 최종재 관세율에 차이가 없음

<표 19> 주요국의 공산품 중간재와 최종재 관세율 비교(2006년)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중간재	5.96	3.79	3.91	3.79	3.06	3.68
최종재	7.14	3.60	3.91	2.92	4.51	4.47

-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미국과 EU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은 가격 경쟁력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수입선 전환으로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단순 조립의 중간재 부품의 관세율은 낮추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는 대부분 가격보다는 품질에 우선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현재의 중간재 관세율 수준을 급격히 조정하기보다는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 이후 미국, EU,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과 EU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또한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일단은 FTA를 통해 긍정적인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향후 일본,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다면 중간재 수입의 약 75%에 대해 무세가 적용되는 상황 발생

□ 일본, 중국과의 FTA 발효 이후 중간재 관세율 정책은 의미가 크게 퇴색할 수 있음

- 중간재 관세 유지를 통한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 보호 효과를 거의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렇지만 일본, 중국과의 FTA 발효 이후에도 중간재 관세율을 무세화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중간재 관세율이 무의미해졌다고 하면 기존의 중간재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음
- 유지할 경우 향후 논의될 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의 기준 세율 역할
- 최종재의 생산 증가를 위한 중간재 관세율 무세는 이미 FTA 체결국을 통

해 이루어짐

- 유지할 경우 중간재 산업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4. 동일 물품의 상이한 관세율로 인한 문제

□ 개별 국가별로 FTA가 체결됨으로써 여러 가지 관세율이 혼재하는 상황 발생

-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관세율 혼재
 - 수입국별로 다른 관세율 적용
 - 동일한 수입국인 경우에도 원산지에 규정에 따라 다른 관세율 적용

□ 이러한 FTA체결 국가와 미체결 국가간에 동일 물품에 대한 관세율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제한 효과
- 특히 품질까지 동일한 품목에서 무역전환을 통해 수입국이 급격히 변함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금지금, 다이아몬드 등과 같이 품질·규격이 정형화된 품목

□ 그러나 이와 같이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양자간의 합의라는 FTA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임

- FTA는 폭 넓은 관세인하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상보다 더 용이하게 합의에 이르게 됨
- FTA의 단점으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언급
-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맺게 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어 거래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바그와티 교수가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용어

가. 금지금

- 우리나라는 금, 다이아몬드 등의 원광석에 대하여는 1%, 원광석을 제련한
괴 또는 나석은 3~5%, 가공제품은 8%의 관세 부과
- 우리나라는 금, 다이아몬드 등에 대해서도 관세율 기본 구조 적용

<표 20> 귀금속·보석의 관세율

(단위: %)

구분	금	백금	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원광석	1	1	1	1	1	1
괴(골드바)·나석	3	3	3	5	5	5
가공제품(반지 등)	8	8	8	8	8	8

- 우리나라의 금에 대한 관세율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과세
 - 비화폐용 금(7108.11~7108.13)에 대하여는 3%의 관세 부과
 - 화폐용 금(7108.20.0000)에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금지금(HS 7108)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3%의 관세 부과
 - 반면, 금제품(HS 7113, 7114)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과세
- 우리나라의 주요 금지금 수입 국가
 - 홍콩, 호주, 스위스,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 등
 - 이들 국가들이 전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00년 이후 홍콩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 2007년부터 스위스로부터의 수입 증가

<표 21> 금지금의 국가별 수입 비중

(단위: %)

국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주	29.1	24.1	22.9	48.8	39.0	35.8	18.8	7.4	18.9	25.9	15.6	25.9	77.8
홍콩	0.2	0.0	0.5	2.1	10.7	32.4	52.1	50.5	58.3	51.0	31.1	39.2	15.2
스위스	17.2	21.4	18.7	15.0	6.1	12.9	6.7	4.0	4.1	5.6	43.9	25.0	3.0
영국	11.5	9.1	16.4	22.8	35.7	12.6	20.7	37.5	9.3	0.0	0.1	0.0	0.0
남아프리카	26.1	8.5	13.2	3.1	1.2	0.0	0.5	0.0	0.0	0.0	0.0	0.0	0.0
미국	9.2	18.7	13.8	0.2	0.5	0.2	0.0	0.1	0.4	0.3	0.1	0.2	0.0
총계	93.3	81.8	85.5	92.0	93.2	93.9	98.8	99.5	90.9	82.8	90.8	90.3	96.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스위스로부터의 금지금 수입 비중 증가가 홍콩으로부터 수입 전환보다는 FTA로 인한 수입 창출로 해석 가능

<표 22> 금지금의 국가별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 주	1,382	807	644	862	502	510	484	239	82	120	146	171	77
홍 콩	11		14	38	137	462	1,340	1,624	253	236	292	259	15
스위스	819	719	525	264	79	184	171	128	18	26	413	165	3
총계	4,750	3,352	2,808	1,765	1,287	1,424	2,572	3,214	434	464	939	661	99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다이아몬드

-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관세율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과세
 - 원석에 대해서는 1%의 관세 부과
 -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5%의 관세 부과

-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수입은 크게 3가지 품목에서 이루어짐
 - 7102.21.000 원석(공업용의 것)
 - 7102.39.000 원석(공업용이 아닌 것)
 - 7105.10.200 더스트와 분(다이아몬드 합성의 것)

- 다이아몬드 수입은 FTA 체결에 의해 수입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표 23> 7105.10.2000 더스트와 분(다이아몬드 합성의 것)

(단위: 천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33,457	31,282	29,359	27,777	33,260	34,700
중국	3,571	4,402	5,147	6,847	10,442	13,593
미국	7,196	8,339	6,283	6,320	8,102	10,919
아일랜드	18,330	14,655	14,342	11,351	10,131	6,612
일본	2,128	2,503	1,674	1,518	1,715	1,442
영국	815	442	336	342	1571	845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4> 7102.39.0000 원석(공업용이 아닌 것)

(단위: 천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25,129	26,704	37,005	47,325	58,113	68,028
인도	10,678	10,499	14,714	23,044	29,448	40,762
이스라엘	8,103	6,578	9,347	9,076	14,600	11,532
홍콩	2,268	3,252	4,542	6,470	8,142	5,462
벨기에	609	1,852	3,654	3,876	3,135	5,456
미국	1,223	1,438	1,487	1,975	982	2,047

자료: 한국무역협회

V. 결론

-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WTO DDA협상과 함께 여러 국가들과의 FTA체결로 인해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
 - WTO DDA 협상은 지연되고 있지만 WTO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EU와의 FTA도 발효 혹은 체결될 예정

- 이러한 관세율 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지, 혹은 관세율이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가 된 균등관세율 체계는 1984년에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 인하예시체에 의해 형성
 - 8%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 단일관세율 구조 그리고 중심관세율 구조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중심관세율 구조 유지가 가장 합리적
 - 최적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관세율을 크게 변경시켜야 하지만, 그 결과에 의한 후생증대도 크지 않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경우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 단일관세율 체계의 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

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어 품목별로 관세율이 인하 혹은 인상되는 분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정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 유지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짐

- FTA 비체결국에 대한 대외관세는 이론적으로 FTA 체결 이후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 정책
 - FTA 체결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그 만큼 생산자가 이윤을 더 얻음
 - 그 동안 생산자를 보호하던 관세를 인하해도 생산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세를 내릴 수 있음
 - FTA 체결 이후 대외관세를 낮추는 것은 FTA로 인해 발생하는 비체결국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를 낮추는 효과도 있음

-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영향을 줄 만큼 FTA가 발효된 상황은 아님
 -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규모는 약 10% 정도

- 따라서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의 중심관세율 인하를 DDA 협상과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교역 비중은 아세안을 합쳐 약 30%
 -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음
 - DDA협상에 의한 관세율 인하정책을 통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요인을 흡수할 필요가 있음
 - DDA 협상을 통한 중심관세율 인하를 실시할 경우 FTA 체결로 인해 비 FTA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진행

- 만약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DA협상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인 중심관세율 목표를 가지고 일차적인 관세율 인하 예시제를 실시
- 다만,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FTA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외국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체계가 적용됨
 - FTA가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에 맞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 또한 향후 진행될 WTO 다자간 관세협상에서의 협상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중간재 관세율 정책은 항상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었음
 - 중간재에 대해 관세 유지를 통해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것인지
 - 아니면 무세화를 통해 중간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
- 중간재에 대해 별도의 관세율 수준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하는 것을 고려
 -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는 중간재
 - 예를 들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 등
 -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간재
 -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 등 관세의 산업보호적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
- 이러한 중간재의 관세율 체계는 향후 중심관세율 구조에도 적합한 정책

- 그러나 여러 국가(지역)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역관세 논쟁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
 -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일한 중간재가 여러 최종재에 사용되고 있어 정책당국에서 인위적으로 역관세를 시정하기 어려움
 - 개별적인 FTA로 인해 동일한 중간재에도 여러 가지의 관세율이 존재하고 최종재도 마찬가지로 현상 발생
 - 향후 중심관세율 인하는 이러한 역관세 문제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생산이 최종재만큼 혹은 최종재보다 더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
 - 고부가가치의 중간재 생산은 최종재 생산보다도 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최종재인 자동차 생산기술 발전은 곧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과 일맥상통
 - 미국, 일본, EU 등의 중간재 관세율은 최종재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높음

-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한·미FTA와 한·EU FTA를 통해 미국과 EU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은 가격 경쟁력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수입선 전환으로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단순 조립의 중간재 부품의 관세율은 낮추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는 대부분 가격보다는 품질에 우선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현재의 중간재 관세율 수준을 조정하기보다는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이후 미국, EU,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
 - 전후 재정기능,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의 산업지향적 기능, 그리고 현재의 중심관세율 체계를 통한 시장중립적 기능 수행
 - 관세율 수준이 낮아져도 향후에도 여전히 자원배분 측면에서의 관세율 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박상태, 「한국 관세율 체계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소국과 대국의 경우」, 『재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0. 7.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 『재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정재호,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8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정재호 · 박순찬, 『WTO DDA협상과 관세율 체계 변화 연구』, 정책보고서 06-08,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재호,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일반균형계산(CGE)모형 이용』, 한국조세연구원, 2008.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2009년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09.
- Grossman, Gene and Elhanan Helpman, "The Politics of Free-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1995, pp. 667~690.
- Richardson, Martin, "Endogenous Protec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4, 1993, pp. 309-24.
- Richardson, Martin, "Tariff Revenue Competition in a Free Trade Area", *European Economic Review*, 39, 1995, pp. 1429-37.
- WTO, <http://www.wto.org>